탄 원 서

피고인	김남우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사건	내란중요임무종사·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 2026고합575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들께.

1. 김남우 개인의 혐의 범위

2026년 8월 공개보도에 따르면 김남우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국정원 간부들과 함께 기소됐으며, 합참의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 황원진에게 제기된 별도의 수사대상 선정 지시나 다른 간부의 행동을 김남우에게 자동으로 귀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2026년 10월 30일로 예고됐으나, 이 문서에서는 그 기일의 실제 진행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

2. 합참 요청과 인력 선발 지시의 성격

판단의 출발점은 합참 측 요청의 정확한 문구와 전달 시각, 요청받은 인원의 업무 내용입니다. 인력 선발이 법률상 허용되는 상황실 지원을 위한 통상적 행정행위였는지, 위법한 계엄 집행이나 수사 조치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였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최초 요청을 승인했는지, 김남우가 명단을 직접 결정했는지, 하급자에게 어떤 기준을 지시했는지, 실제 결재문서가 있었는지 원본을 대조해 주십시오.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사실인정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1]

3. 선발·통보·파견·현장업무의 네 단계

인원 선발 지시, 대상자 명단 확정, 실제 파견 통보, 현장 임무 수행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명단이 작성됐다고 해서 모두 파견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파견이 없었다고 해서 준비행위의 법적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원 명단과 업무분장, 전달 경로, 출입 기록, 파견 여부를 각각 확인하면 김남우의 권한 행사와 다른 기관의 후속 조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선발 대상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피고인이 인식했는지도 독립된 판단 대상입니다.

4. 국가정보원법의 시행 시점과 직권남용

판단에는 2024년 12월에 시행되던 국가정보원법의 직무·권한 조항과 벌칙 조항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3] [9] 대법원 2020도12583 판결은 직권의 남용과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에 관한 법적 기준을 검토할 때 참고하되, 해당 사건에서 일부 파기환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4] 인력 선발이 직무상 권한에 포함됐는지라는 질문과, 그 권한을 위법한 목적으로 행사해 특정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라는 질문은 서로 다릅니다.

5. 내란 관련 인식·행위의 독립 심사

내란중요임무종사 여부는 형법 제87조·제91조의 목적과 폭동, 중요임무 수행에 관한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5] [6] 김남우에게 전달된 정보와 그 시점, 인력 선발·파견 과정의 독자적 재량, 실제 후속조치가 핵심입니다.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가 내란 가담을 자동으로 증명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이 인정된다면 증명된 지시 범위·실행 효과·철회 여부를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정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7]

6. 결어

어느 누구도 직책만으로 유죄가 되거나 일반적인 행정업무라는 명칭만으로 면책돼서는 안 됩니다. 김남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지시와 후속 실행을 원문 자료로 특정하고, 법정에서 증명된 범위에서만 책임을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개자료에 없는 반성이나 개인적 선행을 임의로 적어 선처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김남우 | 참고자료 및 제출 전 확인

1. 실제 본문에 인용한 공개자료

[1] 연합뉴스 2026.8.19. 국정원 4명 기소 및 개인별 혐의

[2] 국가정보원법 제13조: 직권남용 금지

[3] 국가정보원법 제22조: 벌칙

[4] 대법원 2021.3.11. 2020도12583 주요 판결

[5] 형법 제87조: 내란

[6]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7]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8] 연합뉴스, 2026.10.25. 국정원 지휘부 10.30. 공판준비기일 예정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정보원법 2024.1.1 시행본 (사건 당시 역사 법령)

2. 사건기록과 직접 대조할 항목

- 합참의 최초 요청 및 인력 선발 결재문서
- 파견명단·파견통보·실제 현장 임무 구분
- 관련 직원에게 요구된 실제 행위의 내용